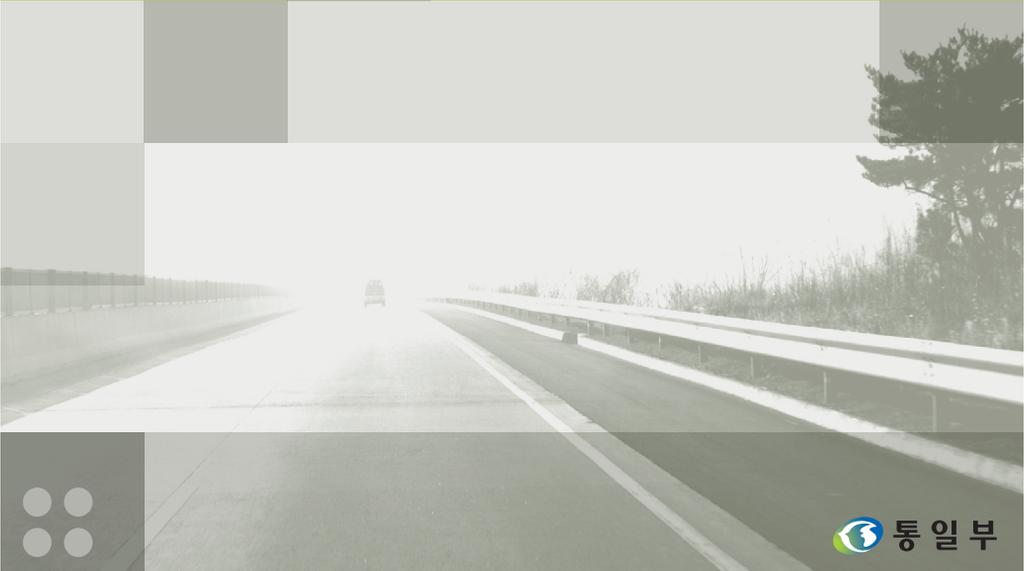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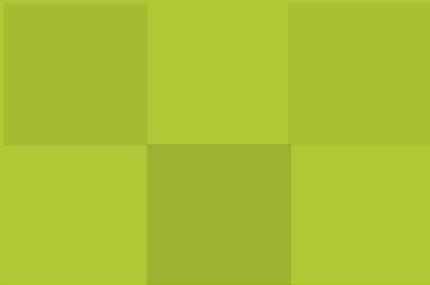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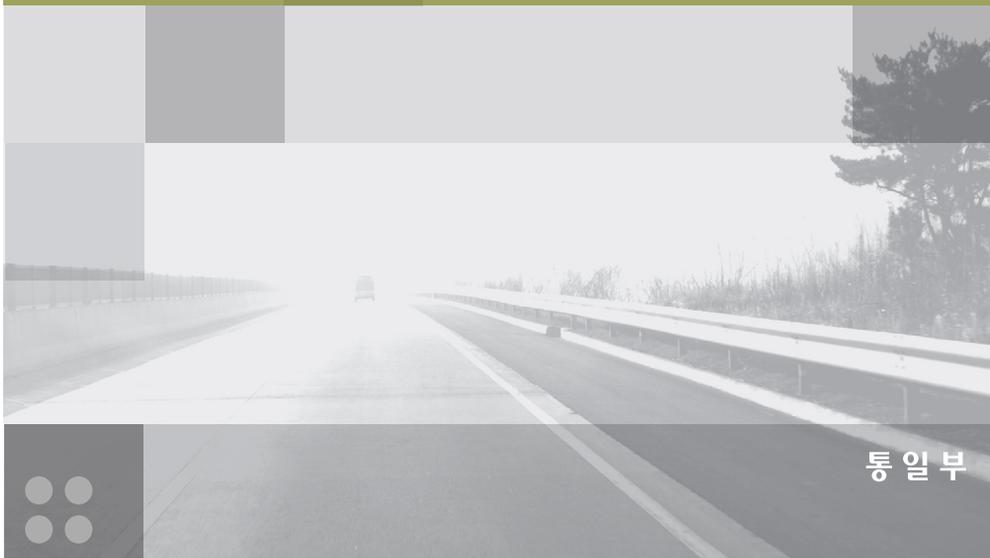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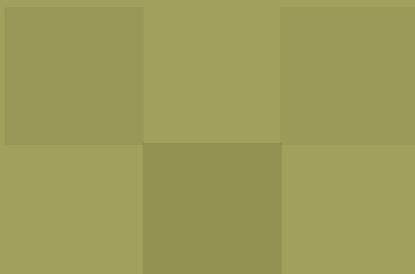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해설집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통일부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발행처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별관
전화 (02) 2100-5815 / 팩스 (02) 2100-5819

인쇄일 2009년 9월 9일

발행일 2009년 9월 11일

디자인·인쇄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목 차

제1편 개관

1. 개 요	3
2. 개정경과	6
3. 법률의 구성	8

제2편 조문별 해설

1. 목 적	13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17
4. 남북한 방문	21
5. 남북한 주민 접촉	31
6. 외국거주 동포의 출입보장	38
7. 남북교역	40
8. 협력사업	53
9. 협력사업 신고	65
10. 결제업무 취급기관	69
11. 수송장비 운행	71





제2편 조문별 해설

12. 통신역무의 제공	77
13. 검역 등	79
14. 보조금 지급 등 지원	81
15. 업무 위탁	84
16.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86
17. 지도·감독	88
18. 관련 법률 준용	91
19. 벌칙 및 과태료	96
20. 북한주민의제	100

제3편 부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0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2



개 관

1



1_개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교류협력 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기본법인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남북교류협력의 재정적 수단인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근거법인 「남북협력기금법」과 함께 남북교류협력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남북한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 등 분야별로 세부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하위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 교류협력 관련 법률로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북 이산가족생사 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남북간 합의서도 남북간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형성·발전시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4대 경협합의서」(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남북간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03.8.20 발효)를 비롯하여 총 13건의 경협 관련 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되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80년대 중·후반 구소련과 동구권 붕괴 상황에서 북한과의 민간교류를 허용하는 “7.7선언¹⁾”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 '88.7.7. 정부는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구조에서 화해와 협력 구조로 바꾸어 가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7.7선언)을 발표하였다.²⁾
 - 이후 정치권 및 우리사회의 다양한 통일논의와 교류협력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4239호)³⁾과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을 제정하게 되었다.⁴⁾

- 정부는 법률 제정 이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남북교류협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하위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

1. 7.7선언은 ① 남북 상호교류와 자유왕래, ② 이산가족의 서신왕래와 상호방문, ③ 남북 교역 및 문화개방, ④ 남북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및 우방국의 대북한 교역 반대, ⑤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협조, ⑥ 북방외교추진 및 북한과 우방과의 관계개선 협조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 7.7선언에 대한 주요 후속조치로는 ① 대북비난방송 중지('88.7.9), ② 공산권 자료개방('88.9.3), ③ 남북한 물자 및 경제인 교류 등 대북경제개방조치('88.10.7), ④ 남북 물자교역 지침제정('88.10.18), ⑤ 남북경제인 상호방문 및 접촉절차 발표('88.12.15), 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89.6.12) 등이 있다.
3. 법률 제정 추진경과
 - ① 정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89.2.13),
 - ② 평민당, 「남북교류촉진법」안 제출('89.5.15), 민자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제출('90.3.14)
 - ③ 국회 외무통일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상임위 대안 의결('90.7.11)
 - ④ 국회 본회의 의결('90.7.14)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은 그동안 통치행위로만 다루어 오던 남북관계를 법적 통제 대상으로 전환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확인하는 한편, 북한을 교류상대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

-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그 내용도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법률을 대폭 개정하였다.

2_ 개정 경과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래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을 포함하여 총 13차례 개정되었다. 이 중 실질적인 개정은 2005년과 2009년도 두 차례 있었는데, 개정 차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8차 개정시 주요 내용('05.5.31)

- 북한주민 접촉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
-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명문화
- 과태료를 제재조항으로 신설

－ 제13차 개정시 주요 내용('09.1.30)⁵

- 북한주민접촉신고 면제근거 신설
- 교역대상자 지정제도 폐지
-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및 협력사업 신고제도 도입
- 행정조사제도 마련
- 업무위탁 근거 신설

.....

⁵ 제13차 개정 추진 경과 : ① 제17대 국회 제출('07.8.28), 회기 만료로 법안 폐기('08.5.31), ② 개정안 재입안 및 제18대 국회 제출('08.10.30), ③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결('08.12.10), ④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09.1.6), ⑤ 국회 본회의 의결('09.1.8) 및 공포('09.1.31), 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발효('09.7.31)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1990년 제정된 이래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을 포함하여 총 19차례 개정되었다. 이 중 실질적인 개정은 네 차례 있었는데, 개정 차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3차 개정시 주요 내용('98.12.31)
 - 수시방문증명서 도입
 -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 승인 가능조항 신설
 - 제14차 개정시 주요 내용('01.10.31)
 - 수시방문자의 '방문신고' 제도 도입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및 북한주민접촉 승인시 '결과보고서 제출' 조건부가 근거 마련
 - 제18차 개정시 주요 내용('05.11.30)
 - 남북출입장소에 경의선·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추가
 - 관광목적으로 북한방문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승인 공문 교부로 대체
 - 제19차 개정시 주요 내용('09.7.30)
 - 북한방문·반출반입·협력사업·수송장비운행 승인시 통일부장관이 부가하는 조건 구체화
 - 협력사업 신고제 요건 구체화
 - 반출반입·협력사업·수송장비운행 승인 신청시 제출 서류 명시

3_ 법률의 구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장·절 구분 없이 총 3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 제8조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 제8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회의 운영, 실무위원회

제9조 - 제11조

남북한 방문 및 남북한 주민접촉,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제12조 - 제15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반출·반입의 승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공고,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제17조 - 제19조

협력사업의 승인·신고,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결제업무의 취급 기관

제20조 - 제21조

수송장비의 운행 및 수송장비 등의 출입관리

제22조 - 제24조

통신 역무의 제공, 검역,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제25조 - 제25조의4

협조요청, 업무의 위탁,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지도·감독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6조의2 - 제29조

별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별칙, 과태료, 형의 감경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조문별 해설

2

1_ 목적

가.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조문해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남한)과 그 이북지역(북한)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동 법 제정 당시, 우리 실정법에서 처음으로 “북한”이라는 용어를 명시하여 「헌법」 제3조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가치중립적 지역 개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사용⁶하기로 하였으며

.....

6- 기존에는 북한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국내재산산도피방지법」), “이북”(「민주평화

- 법률 제정 목적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 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국가가 아닌 민족 내부관계에서의 상대방임을 명시하여 헌법규정과의 충돌 문제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였다.



통일자문회의법), “북한괴뢰정권”(「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등으로 표현하였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조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나. 조문해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남북간 왕래 및 교역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⁷⁾, 「여권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률보다 동 법이

.....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은 상호 규율목적과 규율원리가 다르며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북한이 통일의 대상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 법률은 상호 모순·배치되지 않고 양립 가능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통일의 헌법적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능동적 법률로서 북한을 통일을 위한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인데 비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소극적·방어적 법률로서 북한을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로 인식하고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 사례

- 남북을 왕래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적용되지 않기 위한 요건은?
 - 남북왕래 행위가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상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9.9 선고 97도1656 판결 등)

3_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가. 조 문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조문해설

(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⁸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며,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하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⁹으로서 총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 정부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서 연임이 가능하다.【시행령 제4조】

-
- 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정부 대북정책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수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인 '89.3.30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체로 구성·운영되었다.
 - 9-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의 민간위원 참여 제도는 통일정책 결정에의 국민적 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2005년 법률 개정시 도입되었으며, 2009년 현재 5명의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다.

- 간사는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다.

○ 한편,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관계부처간 실무 협조사항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며,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정부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 및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 총 14인 이내로 구성된다.【시행령 제9조】

(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기능 및 운영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 협의회 안건은 심의안건과 의결안건 등으로 구분되는데, 심의 안건은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협의회 위원의 의견수렴 절차¹⁰를 거치며, 의결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시행령 제6조】

.....

¹⁰ 예를 들어,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제4항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 등을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74조는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대해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신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 위원 중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의안과 관련된 공무원이 대리 출석(서면회의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위원이 대리 출석하는 경우에는 회의 전일까지 간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

다. 달라진 점

- 금번 개정에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시 정부위원이 대리출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아울러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종전에는 실무위원회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한 투명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위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4_ 남북한 방문

가. 조 문

제9조(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횡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이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 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나. 조문해설

(1) 승인 신청

-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북한을 방문하려는 남한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북한방문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통일부장관

에게(남북교류협력시스템¹¹ 등)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 승인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1. 인적사항【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¹²
3. 방문증명서용 사진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주민」의 개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 헌법상 우리 영토이나 사실상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은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국민” 대신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 1990년 7월 당시 국토통일원은 법률안 제안 설명에서 “북한의 주민에 대하여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이념적·정치적 색채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 교역 및 협력사업 등의 경우 “주민”은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해외 체류자와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 개성공업지구내에서 협력사업을 하는 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

.....

11.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제반 신청을 통일부장관에게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시스템(www.tongtong.go.kr)으로서, 민원인은 동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북한방문·북한주민접촉·반출반입·협력사업·수송장비운행 승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당시에는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그동안의 남북간 신뢰에 기초하여 초청의사에 신변안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민원편의 등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제18차 개정('05.11.30)시 “북한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하였다.

단을 통해,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자는 관광사업자를 통해 관련 서류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시행령 제34조】

- 남한을 방문하려는 북한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남한방문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통일부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 승인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1. 방문증명서용 사진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북한주민은 방문승인을 받은 후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남한을 방문해야 하며【시행령 제12조제2항】, 해외에 체류하는 무국적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을 왕래할 수 있다.

(2) 승인 결정 및 증명서 발급

- 민원인의 신청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방문자, 방문목적,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승인 여부를 판단¹³한다.
- 방문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북한 또한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인 “방문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하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13. “방북증명서 발급은 국제정세의 변화, 국내 정치·경제 사정의 변동, 북한과의 관계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그 허용범위가 바뀔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통일부 기타 관련 기관의 정책적 판단도 반영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부 장관이 방북신청에 대해 그 방문 시기와 장소, 대상과 목적 등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여 개별사안에 맞추어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통일부 장관의 재량행위로 판단된다” (서울지법 2003.6.27. 선고 2002나60862)

※ 승인 조건의 예【시행령 제12조제4항】

1. 방문 목적, 방문 대상자, 방문 지역 및 방문 경로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는 경우 그 일정에 관한 사항의 제출
3.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제출
4.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북한 방문 안내교육¹⁴의 이수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방문승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시행규칙 제2조제3항】되며, 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시행령 제12조제3항】

- 일회성 행사를 위해 방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가 발급¹⁵되며,
-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최대 5년) 내에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복수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시행령 제12조제4항】

(3) 남북한 방문

● 방문승인을 받은 자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북한을 방문해야 하며, 방문기간 내에서는 한 차례만 남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 그러나,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은 자, 운행승인을 받은 수송장비의 승무원 등이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에는 방문기간 내에서 별도의 방문

.....

14. 북한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방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방문자가 대면(정례·특별) 교육 혹은 Cyber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방문시부터 방문교육이 면제된다.
15. 관광객 등은 일반적인 방문증명서 외에 다른 양식의 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반복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조제5항】

승인 없이 여러 차례 남북을 왕래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 제7항】

- 다만, 기존에 승인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남북한을 방문하거나, 방문의 경로가 달라지는 경우(육로→해로 등)에는 방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북한 방문 후에는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는 등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재외국민”의 방문절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외국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하여 남북 왕래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재외국민”¹⁶의 범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남한주민”보다 완화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방문 3일 전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방문 신고” 하고 방문할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1항】

- 다만, 재외국민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체류·거주 중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승인을 받고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16.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외국 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만,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으며 장기체류허가의 요건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자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국민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도 재외국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5) 승인 취소

- 방문 승인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북한방문이 제한될 수 있다.
- 승인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이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된다.)
 -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시 부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달라진 점

- 금번 개정에서는 방문 절차 관련 규정 및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 우선, 수시방문증명서의 용어를 변경하여 이를 복수방문증명서로 하였다.
 - 남북한 방문시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고 방문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으로 하여 남북한 방문이 승인대상임을 명시¹⁷ 하였다.
 - 방문승인시에는 방문기간을 1년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외에 “방문기간”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

¹⁷ 이에 따라 종전 수시방문증명서 소지자가 방문증명서 유효기간내에 재방북할 경우 “방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 방문기간 내에는 한 차례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다.

● 북한 방문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실을 반영하였다.

- 남북한 직접 왕래자 중 일부(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를 받고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운행 승인을 받은 수송장비의 승무원)는 방문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방문증명서 발급시 “방문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해서만 조건을 붙일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방문승인 취소사유로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저해 우려,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 저해 우려 이외에 거짓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방문승인시 부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 법령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방문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를 생략하였으며, 방문증명서에 14세 미만 동반자녀 병기 규정 등을 삭제하였다

라. 사례

- 제3국(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면 북한대사관 등이 발급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지?

▶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은 방북경로와 상관없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이 개성공단 공장운영을 목적으로 1년의 방문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사회문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북하려는 경우 별도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방문목적이 다르므로 사회문화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성공단 공장운영을 위해 기존 육로로 방문하였던 자가 해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이는 방문경로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별도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도로 방문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내에서 체류·거주하는 외국 영주권자가 북한을 방문하려는 경우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법 제9조제8항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 “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이 국내 체류·거주 중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경로를 불문하고 방문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방문승인을 받았으나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조치 필요사항은?

☞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방문증명서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조】

다만,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시 부여한 방문기간이 만료되고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방문승인”을 받고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해사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선박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한에서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는 경우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 남한에 입국 또는 상륙하지 않고 단순히 정박 중인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방문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5_ 남북한 주민 접촉

가. 조 문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나. 조문해설

(1) 접촉신고

- 북한주민¹⁸과 접촉하려는 남한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 접촉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통일부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 북한주민 접촉 신고시 구비서류

1. 인적사항【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접촉」의 개념 및 범위 1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접촉의 개념에 대하여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합·통신” 외에 “그밖의 방법” 등 접촉의 형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접촉”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로 해석되며
 - 북한주민을 직접 만나는 회합 외에 통신수단(전화, 우편, 전자우편, FAX 등)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의사교환은 모두 접촉¹⁹에 해당된다.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접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목적, 경위, 방법 및 당시 상황 등을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나
 -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북한주민이 運營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단순 접속하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18.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적(籍)을 가진 사람으로서, 북한의 적을 가진 사람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도 북한주민에 포함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그가 「북한이탈주민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공식 확인되기 전까지는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접촉」의 개념 및 범위 2

-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북한주민으로 의제되므로 이들과의 접촉 또한 신고해야하는 접촉에 포함된다.

- 해외 체류자 등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

- 다만,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 7일 이내에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통일부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제3항】



사후 북한주민접촉신고 대상

-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접촉신고의 한 형태로 “전단지 살포”를 추가하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전단지를 살포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08.11.24)되었다.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단지 살포가 특정한 상대를 전제로 하는 주민접촉 개념과 상치된다는 점,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된 바 있다.

(2) 접촉신고 면제

-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통일부장관에게 접촉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일상적인 접촉 혹은 정부에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북한주민접촉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시행령 제16조제4항】



북한주민접촉신고 면제 대상

-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3) 신고수리 결정

- 민원인의 접촉신고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접촉자 및 대상자, 접촉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수리 또는 수리거부 결정을 한다.
 -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접촉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북한주민과 여러 번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가족²⁰⁾”인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자에게는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신고 수리시 조건의 예【시행령 제16조제5항】

1. 접촉 목적, 접촉 대상자 및 접촉 방법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접촉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시행규칙 제9조제3항】

(4) 북한주민과의 접촉

-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에는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는 등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유효기간이 장기간 부여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북한주민접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달라진 점

- 금번 개정에서는 북한주민접촉 절차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산가족 등)을 반영하여 “가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북한주민접촉신고의 의무가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접촉신고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 종전에는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시 “접촉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해서만 조건을 붙일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접촉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접촉신고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라. 사례

- A에 대한 사항 혐의를 목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사항과 달리 B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였을 경우에는?

☞ 통일부장관이 A에 한정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외 사항인 B와 관련하여 논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

- 접촉신고가 수리되어 유효기간을 장기간 받은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자유로이 접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유효기간 내에서는 접촉신고가 수리된 “접촉의 목적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접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정기적으로 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접촉신고 수리시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우연히 접속한 경우 접촉신고를 해야 하는지?

☞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북한주민과 의사교환 목적이 없는 것이므로 접촉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게시판에 글을 작성·등록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의사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접촉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접촉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접촉할 북한주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접촉신고를 해야 하는지?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접촉할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접촉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접촉의 성사가능성이 유동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6484 판결)

●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이 접촉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방문자와 접촉가능이 있는 모든 사람이 사전에 접촉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 정부와 북한당국간 합의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경우,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방문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위의 두 가지 목적으로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접촉신고를 하여야 하나,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모든 남한주민에 대해 사전 접촉신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사후에 접촉신고를 할 수 있다.

6_ 외국거주 동포의 출입보장

가. 조 문

제10조(외국거주 동포의 출입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²¹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나. 조문해설

-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면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동 조는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이라고 볼 수 없는 무국적자 또는 중국·러시아·일본 등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장기 거주하고 있는 북

.....

21. 「여권법」 제14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16조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 ① 출국하는 무국적자, ②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③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시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 국가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④ 해외입양자 ⑤ 1호-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정하고 있다.

한 적 동포가 남한에 왕래하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되었다.

다. 사례

- 북한주민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제3국이 아닌 북한에서 직접 남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가?
 - ☞ 기본적으로 남한방문승인을 받고 남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7_ 남북교역

가. 조 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반출 또는 반입 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에게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조문해설

(1) 남북교역의 개념

- 남북교역은 남한과 북한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등의 이동”(반출·반입)을 말한다.
 - “물품등의 이동”이란 남북간 직접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제3국을 단순히 경유²²하여 남북간을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또한, 남북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인도·인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²³
- 남북교역의 대상인 “물품등”은 물품(유체 동산), 용역(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디지털 상품)로서,
 - “물품”은 「관세법」 제50조의 관세율표 및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을 말하며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등에 규정된 품목 등을 말한다.

.....

- 22. “단순히 경유한다”는 의미는 운송상의 이유 등에 의해 제3국에서 환적, 일시 장치 등만 이루어지고 수출·수입통관절차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휴대하여 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북한에 왕래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 23.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반출·반입시 세관의 통관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물품과 구별된다.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범위

- 「용역」 : 경영·법무·회계·세무·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업, 문화 산업, 운수업, 관광사업, 그 밖의 지식기반 용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의 양도,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한 영상물(게임·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포함),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2) 승인 대상

- 남한과 북한 간에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별승인대상은 수출입공고 등 수출·수입 제한, 국내 산업 보호,²⁴ 위장반입 방지, 불법 자본 유출·유입 방지 등을 위해 지정되고 있으며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

24. 통일부장관은 특정 품목의 국내 생산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 물량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한도물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 ①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등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금지·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다만,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²⁵ 등 유가증권(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3.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품목
4.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컴퓨터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포괄적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 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광물과 위탁가공에 의해 반입되는 섬유류는 제외한다.
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i), (ii)에 따라 지정된 물품²⁶
7.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iii)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²⁷

② 물품등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물품등에 대한 그 승인여부와는 별도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형태와 대금결제 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3.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

25. 북한화폐는 보편적인 대외지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화폐를 지급수단이 아닌 물품으로 인정하고 남북간 직접 반입 또는 제3국 경우 반입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26. 8(a)(i)는 재래식 무기 등을 의미하며, (a)(ii)는 핵 통제리스트, 미사일 통제리스트, 화학무기 통제리스트, WMD 관련물자 또는 기술 등을 말한다.
27. 8(a)(iii)는 사치품을 말하며, 현재 사치품과 관련하여 13종을 개별 승인대상품목으로

- 예외적으로 통일부장관은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에 대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이러한 포괄 승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반입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승인을 면제하고 있다.
 - 다만, 물품등에 대한 반출·반입 승인여부와는 별도로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이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1

제5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2. 법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를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등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등.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 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

지정하였다. 주요 사치품은 주류, 화장품, 가죽제품, 모피제품, 양탄자류, 진주·귀금속, 전기기기, 자동차, 선박, 광학기기(사진기·영화용 촬영기와 영상기), 시계, 악기, 예술품·골동품이다. 사치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개별승인이 필요하나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일 때에는 개별승인이 불필요하다. 사치품은 건별로 시각가격동향, 최종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2

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3) 승인 신청

- 물품등을 반출·반입하려는 자는 반출·반입 7일 전까지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15·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통일부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반출·반입의 목적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25조제1항】

※ 승인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1. 반출·반입 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18호·19호 서식】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통일부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이란 물품등의 단가, 물품등의, 수량 및 총금액, 대금결제방법,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을 말한다.【시행령 제25조제2항】

※ 변경승인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1.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북한으로 “전략물자²⁸”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반출 승인 절차²⁹를 거쳐야 한다.

(4) 승인 결정

-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이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반출·반입(변경) 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21·22·23·24호 서식】가 발급된다.【시행규칙 제11조제4·5항】
-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특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에 준하는 내용의 반출·반입 결과보고를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

.....

28. “전략물자”란 무기류와 무기류의 제조·개발·이전 등에 이용이 가능한 물자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로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및 기술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전략물자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별표2~별표3에 열거되고 있다.
29. 전략물자 반출시에는 서류보관 및 사후관리 의무 등이 추가로 부여되는 등 보다 엄격한 절차가 적용된다.

※ 승인 조건의 예

1. 물품등 반출·반입의 목적 및 경로, 가격조건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에 관한 사항 등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반출·반입 시행

● 물품등을 반출·반입한 경우에는 수출·수입의 통관시와 마찬가지로 관세청에 통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다만, 북한산 물품을 반입할 경우 이는 무관세 대상이므로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03.9월 발효)에 따라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통관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북한산 원산지 판정기준 1

- 다음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함.
 - － 당해 물품의 전부가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 －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³⁰
- 다음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 － 제3국에서 생산되어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

.....

30. “중국에서 제작한 미완성의 면타올(HS5802)을 북한에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 제작업을 하여 완성품을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HS6302)이 ‘세 번(HS)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있다” 고 한 바 있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도4245 판결)



북한산 원산지 판정기준 2

-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6) 조정명령 및 승인 취소

- 반출·반입을 승인받은 자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남북 당국간 합의서의 이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조정명령은 반출·반입시 물품등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에 대해 발동할 수 있다.



조정명령의 요건【법 제15조제1항】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반출 또는 반입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한편, 반출·반입 승인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반출·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 승인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이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된다.)
- 반출·반입 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물품등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 공고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통일부장관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달라진 점

- 금번 개정에서는 남북교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선하였다.
 - 교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였던 교역당사자 지정제도를 폐지하였다.
 -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함하는 개념인 “물품등”으로 확대하였다.
 - 반출·반입 승인시 통일부장관이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반출·반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정명령의 내용·요건을 구체화하였다.

라. 사례

- 북한산 물품이 중국 등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수입하는 것은 대외무역에 해당되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남북교역이 아니다.

- 남한산 또는 북한산이 아닌 “물품등”이 남북간에 이동할 경우에도 반출·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 제3국산 물품등이라 하더라도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에 해당하므로, 반출·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북한과 거래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 원칙적으로 모두 승인대상이나,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포괄적 승인 대상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않고 교역을 진행해도 되는지?
 - ☞ 포괄적으로 승인한 물품등이라 하더라도 거래형태가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이거나
대금결제 방법이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의 유형은?
 - ☞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제3자 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과 수령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에게 선물한 물품에 대해서도 반출·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에 대한 선물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증여(무상)에 해당되므로 반출·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소프트웨어를 CD 또는 휴대용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반입하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반입”에 해당하는지?
 - ☞ 소프트웨어는 이동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승인대상에 해당한다.
 - ※ 소프트웨어의 이동방법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받거나, 노트북과 같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인수” 하는 경우, 이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입으로 볼 수 있으나, 어느 경우든 반입승인이 필요한 대상임에는 변함이 없다.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반입은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 대외무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세관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세관신고 대상인 물품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세관의 기준에 따른다.

8_ 협력사업

가. 조 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그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협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조문해설

(1) 협력사업의 개념

-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보건 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 협력사업 제도는 남한과 북한이 특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외환 거래, 물자 반출·반입, 인원의 남북왕래 등을 정부가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문 및 반출·반입 승인제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 협력사업은 크게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나뉜다.
 - 경제협력사업은 남한의 사업자가 북한에 투자하여 남북 사업자가 공동으로 영리사업을 벌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사회문화협력사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남북이 공동조사, 공동제작, 공동개발 등을 실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³¹은 일정기간 지속되는 인도적 성격의 “개발지원성 사업” 등 북한과의 공동 협력을 전제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승인 대상

-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남북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등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을 합영, 합작, 단독으로 투자하는 행위이다.【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협력사업” 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하기로 하는 행위
- 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 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

.....

³¹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은 우리 민간단체의 일방적 지원에 그쳤기 때문에 협력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이 점차 다양화 되고 중장기적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경제협력사업이나 사회문화협력사업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2

-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상대방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 가. 남북간 합의에 의해 경제개발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포괄적 사업권을 취득한 자와 계약을 통한 투자행위
 - 나.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 다.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 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남북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 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공동조사·연구·저작, 음악·영화 등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추후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3) 승인 신청

-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통일부장관(남북교류협력 시스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협력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³²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

32. 통일부 고시인 「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은 협력사업승인신청

제27조제1항]

※ 승인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면 된다.)
2. 협력사업 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이를 변경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남북 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3항】

※ 변경승인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승인 결정

- 협력사업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결정되어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협력사업(변경) 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31·32호 서식】가 발급된다.【시행규칙 제13조제4항】

.....

서 제출시의 구비서류의 기재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27조제4항】

※ 승인 조건의 예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해지에 관한 사항, 협력사업의 진행상황 등)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협력사업 시행

- 협력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을 북한에 지급하는 등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대북투자 신고를 해야 한다.
 - 한편, 대북투자용으로 물품등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받고, 세관에 신고한 후 반출할 수 있다.
- 협력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승인시 부가한 조건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조정명령 및 승인 취소

- 통일부장관은 남북 당국간 합의서의 이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 시행에 대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조정명령은 협력사업의 내용, 조건,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대해 발동할 수 있다.



조정명령의 요건【법 제18조제1항】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협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한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협력사업의 시행이 제한될 수 있다.
- 승인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된다.)
 - 협력사업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 협력사업 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이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된다.)
 -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협력사업 시행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통일부장관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달라진 점

- 금번 개정에서는 협력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협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통합하였다.
 - 협력사업 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명시하였으며, 조정명령의 내용·요건을 구체화하였다.
 - 종전에는 협력사업 승인시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부가조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라. 사례

- 우리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북한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는 협력사업승인 대상인지?
 - ☞ 원칙적으로 “남한주민이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제3국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제3국 법인이 북한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남한주민이 투자한 외국 기업이 북한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이 아니다.³³

다만, 남한주민이 외국기업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그 경영권 및 의사결정권을 장악하는 등 실질적 측면에서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남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모두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남북이 공동으로 행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일회성 행사(일일 취재, 음악회 개최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력사업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북 및 반출·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북투자를 현물로 하고자 할 경우, 주의사항은?

☞ 현물출자용 물품은 세관신고시 투자용 물품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합영, 합작, 단독 투자는 어떻게 다른지?

☞ 북한 지역으로의 투자는 합영, 합작, 단독 투자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합영 투자는 남북이 공동 출자하여 공동 경영하고, 이익 및 손실도 지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배하는 형태를 말한다.

.....

33.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예를 들어 제3국 법인 이 제3국에서 북한주민을 고용한 경우에는 노사갈등 등에 대한 처리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정부와 사전 긴밀히 협조한 후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작 투자는 남북이 공동 투자하며 이익은 계약에 따라 공동
향유하나, 경영 및 생산 활동은 북한이 담당하는 형태를 말
한다.

단독투자는 남한 투자기업의 단독투자자로 경영하며, 이익 및
손실을 단독으로 부담하는 형태를 말한다.

9_ 협력사업 신고

가. 조 문

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나. 조문해설

(1) 신고 대상

-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 개성공업지구 등 특구 지구내³⁴에서, 50만달러 이하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액투자”로서 신고만으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

³⁴ 개성공업지구 외에 금강산 지역 등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 협력사업 신고제 대상이 될 수 있다.

(2) 협력사업신고

- “소액투자”인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통일부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2항】

※ 협력사업 신고서 제출시 구비서류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면 된다.)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고의 수리를 받은 사항 중 이를 변경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3항】

※ 협력사업 변경신고서 제출시 구비서류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신고 수리 결정

- 민원인의 협력사업 신고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원칙적으로 7일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며, 수리한 경우에는 「협력사업 신고수리서」【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발급한다.【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신고수리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29조 제4항】

※ 신고 수리 조건의 예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협력사업의 시행 및 조정명령

- p.60 협력사업 승인의 경우와 같다.

다. 달라진 점

- 금번 개정에서는 “소액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협력사업 신고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 남북간 합의에 따라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행하는 협력사업은 여타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협력사업에 비해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이 크며, 정부의 관리·감독 정도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도입되었다.

라. 사례

- 신고 대상이 되는 협력사업 투자액 50만달러의 기준은?
 - ☞ 신고한 협력사업의 누적 투자금액을 말한다.

- 30만달러를 투자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25만달러를 투자한 경우?
 - ☞ 투자액이 추가되어 총 투자금액이 50만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0만 달러를 투자하여 음식점 사업을 하는 자가 10만 달러를 투자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 음식점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신고 외에 편의점 사업에 대해 별도로 협력사업 신고를 한 후,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10_ 결제업무 취급기관

가. 조 문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조문해설

- 통일부장관은 남북교역 등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① 한국은행 ② 한국 수출입은행 ③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④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31조】
 -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결제 업무의 범위 및 방법, 절차는 일반적인 외국환 거래와 동일하게 「외국환 거래법」을 준용하나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현재 남북교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대금결제는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고 있는 결제방법과 결제통화로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특례는 정해진 바 없다.
 - 다만, 대금결제 방법이 「외국환거래법」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인 경우에는 반출·반입 품목이 포괄승인 품목이라 하더라도 대금결제 방법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남북은 '92.9.17 발효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제8항에서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며 2003년 8월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추가적인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11 _ 수송장비운행

가. 조 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노선 등 조건을 붙이거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나. 조문해설

(1) 승인 신청

- 남한과 북한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하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통일부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33조제1항】

※ 승인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송장비운행승인을 받은 사항 중 이를 변경하려는 자는 「수송장비운행변경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3조제4항】

※ 변경승인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선박운항 신청 자격

-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제1항³⁵ 및 「해운법」 제23조·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국내 해상운송회사만 가능하다.(국적선 운항 또는 제3국적선 용선)
 - 다만, 외국의 해상운송회사는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승인 및 승인기준에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 선박수리·선원교대·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 경유하기 위해 운항하는 경우,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선박대리점을 통해 남북한간 선박 운항을 대리신청할 수 있다.

(2) 승인 결정

-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이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수송장비운행(변경) 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40·41호 서식】가 발급된다.【시행규칙 제16조제3항】
 - 수송장비 운행승인서는 전자식카드 등으로 발급될 수 있다.
- 통일부장관이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운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시행령 제33조제5·6항】
 - 유효기간은 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5년 이내에서 부여하며, 부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부여한다.

.....

35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항로개설) 제1항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 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 승인 조건의 예

1. 운행 목적,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수송장비의 운행

- 수송장비는 “출입장소”를 통해 남북을 이동할 수 있다.【시행령 제2조제1항】



출입장소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소재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 소재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5.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 등

- 수송장비 운행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가 준용되므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검색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준용 법률

- [출입국관리법] 수송장비 출입항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 검색결과 위반한 사실 발견시 승객 등의 출입국 정지, 수송장비 출입항시 수송장비 장의 출입항예정통보서 사전 제출 등
- [검역법] 수송장비·승무원·승객에 대한 검역조사, 격리가 필요한 자에 대한 격리조치, 소독이 필요한 물건의 보관 등

- 수송장비 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승인시 부가한 조건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하여야 한다.

(4) 승인 취소

-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수송장비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 승인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이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된다.)
 - 수송장비운행 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달라진 점

- 금번 개정에서는 수송장비운행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종전에는 운행승인신청서 제출기한이 선박·항공기·자동차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은 수송장비의 종류와 관계없이 7일 이내 제출하도록 기한을 일원화하였다.
 - 수송장비운행 승인 신청시 보험회사 등이 발급하는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 및 선박국적증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운행승인 유효기간을 정기운행은 2년 이내, 부정기 운행은 1년 이내에서 부여하였으나 개정법은 정기운행은 5년 이내, 부정기운행은 2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운행승인시 통일부장관이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행승인 취소규정을 신설하였다.

라. 사례

-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남북한을 운항하는 경우에도 선박운항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남북간에 운항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남북해운합의서³⁶」가 적용되므로, 남북한간 선박운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국에서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3국과 상대측간의 운항이므로 「남북해운합의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자동차운행승인 신청시 출입통행계획 제출은 면제되는가?

☞ 출입통행계획은 자동차운행승인 신청과 별도로 매 방북시마다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36 「남북해운합의서」 제2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_ 통신역무의 제공

가. 조 문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조문해설

-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9조³⁷ 등에도 불구하고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통신역무는 「우편법」에 따른 기본 우편업무와 부가 우편업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

.....

37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간통신 역무와 부가통신역무이다.

- 통신역무 요금은 남북 당국간 합의에 따르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3_ 검역 등

가. 조 문

제23조(검역 등) ①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조문해설

-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 화물, 사람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통일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³⁸

.....

38. 현재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에 대한 검역증 발급과 개성공단 일일 방북자에 대한 검역질문서 징구가 생략되고 있다.

다. 달라진 점³⁹

- 종전에는 기존의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하물(荷物)에 대해서만 검역조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은 「검역법」 체계에 맞추어 사람과 수송장비, 화물⁴⁰에 대해서도 검역조사를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개정법은 「검역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보입국자에 대한 검역조항(「검역법」 제34조)을 추가하였다.
- 검역절차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9_ 동 사항은 손숙미의원 등 12인이 발의('09.2.4)한 법률안이 '09.4.30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09.5.28부터 시행된 내용이다.

40_ 일본식 용어인 荷物을 화물로 수정하였다.

14_ 보조금 지급 등 지원

가. 조 문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조문해설

(1) 지원 대상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간 방문·협력사업·반출입 등을 시행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지원 내용

-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규칙」,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기타 지원(후원명칭, 상장, 정부포상)을 할 수 있다.

-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로는 주민왕래 자금지원, 사회문화협력사업 자금지원, 교역 및 경협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또는 융자,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제도 등이 있다.【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 이 중 교역 및 경협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는 보증 또는 보험 등이 있다.【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9조】
- 남북협력기금지원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융자·대출 : 교역자금 대출은 교역물품 반출·반입 자금 대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반출자금 대출, 실적한도 대출 등으로 나뉘며 대출금액은 계약금액의 80-90%이다.
 - 경제협력사업 대출은 투자금, 운전자금, 산업용지 분양자금, 사회간접 자본시설 자금 대출로 나뉜다.
 - ② 보험제도 :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⁴¹ 등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는 경제협력사업보험과 교역보험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 ③ 주민왕래 자금 지원 :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자비에 의해 남북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해 필요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등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 ④ 사회문화협력사업 자금 지원 :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50-70%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⑤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비핵화 지원, 기타 남북교류협력 등과 관련하여 당국간 합

.....

⁴¹ 담보하는 비상위험으로는 수용위험, 전쟁위험, 송금위험, 약정불이행 위험, 불가항력 위험이 있다.

의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자금의 용자, 무상지원, 사업지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3) 관리·감독

- 통일부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이 지원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15_ 업무 위탁

가. 조 문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조문해설

(1) 위탁 업무

- 통일부장관은 남북 당국간 합의한 사업의 추진,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북한방문·반출반입·수송장비운행 승인 및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절차에 수반되는 통일부장관의 업무 중에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시행령 제38조제2항】⁴²

.....

⁴² 그동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에 따라 “이산가족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주민접촉 신고 접수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임하였으나

(2) 위탁 대상기관

- 통일부장관은 상기 위탁 가능한 업무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관련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될 수 있다.
 - 통일부장관은 특정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위탁 절차

- 당국간 합의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다.

다. 달라진 점

- 금번 개정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 향후 통일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00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업무 위탁 규정이 신설되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는 '09.7.30 삭제되었다.

16_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가. 조 문

제25조(협조 요청)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의3(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조문해설

-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 유지와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통일부장관은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관세청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간 이동하는 인원, 물품 등에 대한 통계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통일부장관은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관리⁴³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9조】

다. 달라진 점

- 남북간 이동하는 인원·물품 등에 대한 통계유지 및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운영이 중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조항을 신설하였다.

.....

43.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각종 통계를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책자 발간, 통일부 홈페이지 게시)으로 발표하고 있다.

17_ 지도·감독

가. 조 문

제25조의4(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원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조문해설

(1) 행정조사 방법

-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 통일부 장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40조제1항】

- 관계 공무원은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사무소 및 시설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서류·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다.【시행령 제40조제2항·제5항】
- 통일부장관은 경찰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협조 받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행정조사 절차

- 통일부장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거나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계획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조사계획서에는 조사일시, 취지,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된다.(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40조제4항】
 - 관계공무원이 사업 운영상황 등 현장을 조사할 경우에는 증표를 소지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0조제3항】
- 통일부장관이 물건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한다.

(3) 행정조사 결과

- 통일부장관은 조사 결과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달라진 점

- 금번 개정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지원단체를 관리·감독하고 협력사업을 건전하게 추진하도록 관련 단체를 지도하기 위해 행정조사권을 신설하였다.
 -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⁴⁴은 “통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이를 직접 명시하였다.

.....

44.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②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8_ 관련 법률 준용

가. 조 문

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회
 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

나. 조문해설

(1) 개 관

- 남북한간의 거래는 분단국 특유의 거래로서, 국내·국제 거래도 아닌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한과의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면서도
 - 남북간 투자, 물품등의 반출입, 경제협력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41조제3항】
- 다만, 「대외무역법」등 관련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상기 준용 법률 외의 사항에 대해 특례⁴⁵를 정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45.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에서 대북투자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도록 하는 등 그 특례를 정하고 있다.

(2) 준용 법률

- 남북한간 교역·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준용⁴⁶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시행령 제42조제3항】

(3) 조세 관련 준용 법률

① 관세 등의 과세

- 물품등을 반출하는 경우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⁴⁷의 “수출등”으로 보아 관세 등은 환급한다.【시행령 제41조제4항】

※ 다만, 위탁가공과 같이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등”으로 보지 않는다.

－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 한편, 남북을 왕래하는 선박과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외국 무역선 및 외국무역기”로 간주하여 「관세법」⁴⁸상 여행자휴대품

.....

46.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수출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은 현재 북한주민의 남한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남북협력기금법」에 유사한 제도가 있어 현실적으로 준용될 가능성이 낮다.

4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수출등”이라 함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8. 「관세법」 제96조(여행자휴대품의 면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면세, 입출항절차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41조제5항】

- 다만, 판매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 북한으로 물품등이 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 품목에 대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시행령 제42조제3항】

-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국외제공용역으로 간주⁴⁹되어 「부가가치세법⁵⁰」,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⁵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이 준용된다.
- 다만, 선박·항공기 내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 북한에서 물품등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여 물품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시행령 제42조제1항】

- 또한, 반입 물품등이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 법률이 준용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49. 현재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육상운송수단을 통한 북한항행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서 제외되고 있다.
50.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51. 「개별소비세법」 제15조(수출 및 군납면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③ 소득세 등의 과세

- 남북간 투자·반출반입·협력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부과 등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한다.【시행령 제44조제1항】

- 이 경우, 물품등을 반출하는 것은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물품등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⁵²

④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출입장소를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사람의 휴대품·별송품⁵³에 대해서는 일반 반입 물품등과는 달리

-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시행령 제43조제1항】

- 한편,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다. 달라진 점

- 금번 개정에서 교역의 대상이 물품에서 물품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준용 법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52. 이 경우에도 남한과 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53. 「남북한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특정물품의 면세범위) ① 다음 각호에 계기된 특정 물품의 면세범위는 품목당 기준에 의하되, 제7조제1항의 전체 취득가격 총액에 포함한다. 1. 주류 : 1병(리터 이하) 2. 담배 : 궤련 200개비, 엽궤련 50개비, 기타 담배 250그램 3. 향수 : 2온스 4. 농림축수산물·한약재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3-7조를 준용한다. 5. 한약재(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이내에 한함) 인삼 300g 녹용 150g 기타 3kg(품목당)

19_ 벌칙 및 과태료

가. 조 문

제2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복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나. 조문해설

(1) 벌칙 대상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문·반출반입·협력사업·수송장비운행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일부장관의 반출반입·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소액투자 협력사업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태료 대상

- 벌칙 대상보다 남북교류협력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은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재외국민이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반출·반입 또는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북한주민접촉 또는 협력사업 신고 수리시 부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행정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통일부장관이 명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요건의 성립,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다. 달라진 점

- 금번 개정에서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과 요건을 조정하였다.
 -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거짓으로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협력사업 신고제 도입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협력 사업을 시행한 자 또는 거짓으로 협력사업 신고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신설하였다.
 - 종전 수시방문증명서 소지자의 방문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하였다.
 - 거짓으로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한 경우, 반출·반입 또는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북한주민접촉 및 협력사업 신고 수리시 통일부장관이 부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행정조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신설하였다.

20_ 북한주민의제

가. 조 문

법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나. 조문해설

(1) 의 미

- 동 조항은 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과의 교류 및 접촉에 대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⁵⁴ 되었다.

— 즉, 우리 국민과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동포들과의 교류·접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동 조항을 규정하였다.

- 이에 따라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의제되며, 그 구성원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

54_ 1990.7월, 외무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 보고에서 “본 조항은 해외동포들을 북한주민으로 의제하여 교류·접촉을 가능케 한다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보고하였다.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⁵⁵

- 다만, 남한방문승인 및 출입절차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제10조와의 관계

- 제10조는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해외거주동포가 남한 왕래시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 조항은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이라고 볼 수 없는 무국적자 또는 중국·러시아·일본 등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북한 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가 남한에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제30조는 제10조와 경합하지 않기 위해 방문과 관계되는 제9조 및 제11조는 북한주민 의제조항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북한주민 의제조항을 전체적으로 적용할 경우, 제10조에 따르면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나, 제30조에 따르면 “남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55. 북한주민으로 의제되는 자와의 접촉이라 하더라도 남북간 교류협력과 무관한 일상적인 만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 록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31] [법률 제9745호, 2009.5.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의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

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1.30]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 3.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7조 (협의회 회의와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8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9조 (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 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이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9조의2 (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 (반출·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 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30]

제14조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전문개정 2009.1.30]

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반출 또는 반입 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에게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 삭제 <2009.1.30>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제17조의2 (협력사업의 신고) 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1.30]

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협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북한측 상대방과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9조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노선 등 조건을 붙이거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2조 (통신 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3조 (검역 등) ①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③ 삭제 <2009.5.28>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 (협조 요청)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의2 (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제25조의3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25조의4 (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원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8> [본조신설 2009.1.30]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

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인투자 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6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2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8조의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9조 (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附則 <제4239호, 1990.8.1>

-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②(다른 法律의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에 第2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중 “貿易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貿易業의 登錄을 한 者”로 한다.

附則(대외무역법) <제5211호, 1996.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3月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⑩省略

⑩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중 “貿易業의 登錄을 한 者”를 “貿易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한다.

第14條第1號중 “自動承認品目.”을 削除하고, 同條第1號 및 第2號중 “制限承認品目”을 각각 “승인을 要하는 品目”으로 한다.

第9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法은 1998年1月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 1998.9.1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租稅減免에 관한 規定의 적용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租稅 減免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免除申請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外國人投資

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免除申請을 한 것으로서 이 法 施行日까지 租稅減免決定 또는 租稅免除決定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에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免除申請을 한 것으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第5條(申告受理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申告受理를 받았거나 승인·許可·보고·확인 또는 登錄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法에 의하여 각각 申告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申告·승인·許可·확인 또는 登錄 등의 申請을 받아 그 節次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③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 또는 租稅免除決定을 받은 것은 附則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6條 및 第7條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3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外國人投資促進法

② 내지 ⑩省略

第9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外資導入法중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 인용된 規定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16호, 2000.12.29> (대외무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對外貿易法에 의하여 貿易業의 申告를 한 者"를 "對外貿易法에 의한 貿易을 하는 자"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7539호, 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364호, 2007.4.11> (검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6> 까지 생략

<1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91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7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북한 방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사항(제1호와 제2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제4호와 제5호 중 “거짓으로 보고한 자”)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

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

부칙 <제9745호, 2009.5.28>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7.31] [대통령령 제21648호, 2009.7.30,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입장소)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 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 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개항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제4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사유를 협의회의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이 영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그 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준용규정 등) 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제12조 (방문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북한의 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복수방문증명서(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수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방문 목적, 방문 대상자, 방문 지역 및 방문 경로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는 경우 그 일정에 관한 사항의 제출
 3.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제출
 4.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북한 방문 안내교육의 이수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법 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2. 법 제20조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수송장비의 승무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⑨ 통일부장관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3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4조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① 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5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증명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2.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3.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4.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5.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 ⑤ 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접촉 목적, 접촉 대상자 및 접촉 방법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수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통일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주민접촉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7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8조 (가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제19조 (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경우 또는 협의가 의결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0조 (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1조 (심사 신청)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의 확인
2. 휴대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 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를 받은 사람이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 결과 출국금지가 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람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각각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수량 및 처리 방법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장 교역

제25조 (반출·반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 등의 반출·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반입 7일 전까지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반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총금액(총금액이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가 및 수량
 2. 대금결제 방법
 3. 반출·반입 유효기간
 4. 반출·반입 승인 조건
-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물품등 반출·반입의 목적 및 경로, 가격조건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협력사업

제27조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

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협력사업 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청문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기록된 서면을 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협력사업의 신고) ①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또는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
2. 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

②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이 정한다.

제30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해지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착수 및 완료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의 진행 상황
 4. 협력사업의 진행 중 발생한 분쟁 또는 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32조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33조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 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말하며,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을 말하며,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⑤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 운행 목적,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제한 또는 변경
 - 2.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제출
 -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수송장비 운행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定期)와 부정기(不定期)의 구분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5년 이내
 - 2. 부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2년 이내

-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 (대리신청 등) 대리인이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통신 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제36조 (통신 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37조 (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

신 역무에 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방문증명서의 발급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 신고의 접수
3.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4. 법 제20조 또는 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제39조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계를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사무소·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외무역법」등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

-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등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교육세법」
 8. 「식물방역법」
 9. 「가축전염병예방법」
- ④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 ④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영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남북교류·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반입, 그 밖에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에 물품등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등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할 때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정부와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1648호, 2009.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문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거나 방문신고를 한 사람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방문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승인받은 협력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받은 협력사업이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으로 본다.

제7조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 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8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②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 받은”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복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	300만원 이하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복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2호	100만원 이하
3.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	100만원 이하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	100만원 이하
5.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	300만원 이하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5호	300만원 이하
7.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6호	300만원 이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7.31] [통일부령 제52호, 2009.7.31,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문승인 신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 갈색, 4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 4면

-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유효기간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시행일 : 2009.10.31]

제4조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북한 방문 안내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 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입신고서 등) ① 영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사확인 도장의 규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다.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4조 (협력사업 신고서)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5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등) 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52호, 2009.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문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증명서로 본다.

제3조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표] 심사확인 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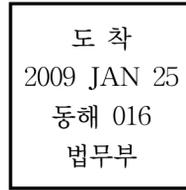
심사확인 도장(제10조제2항 관련)

(예시)



(규격 30mm×20mm)

(예시)



(규격 30mm×20mm)

[별지 제1호서식]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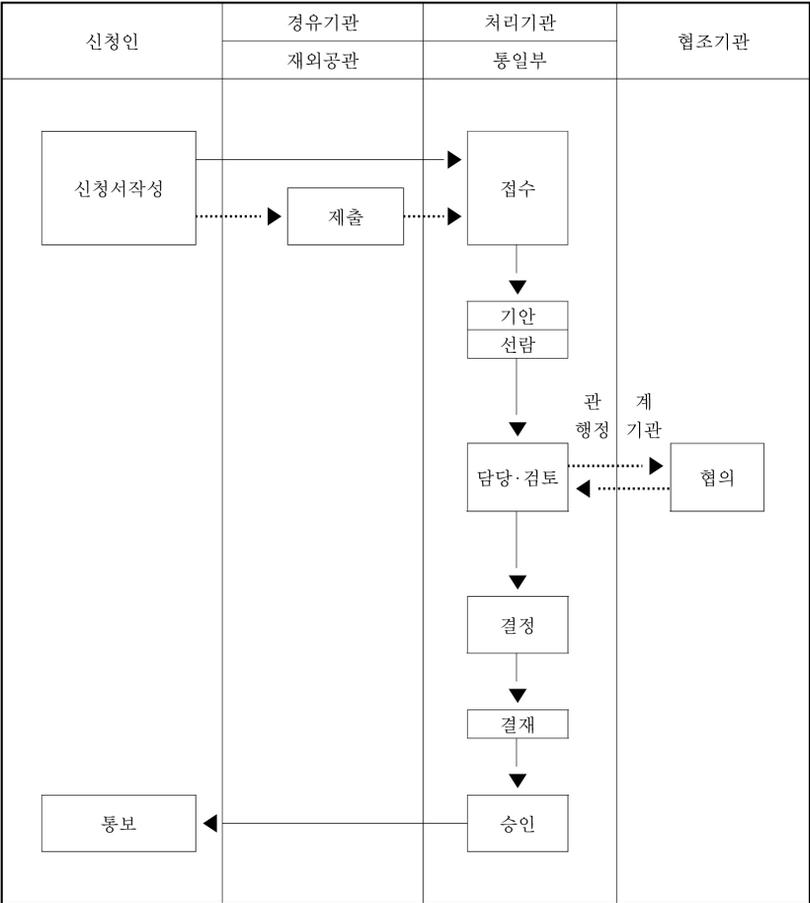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방문자 인적 사항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화 :)			
	소속 및 직위	(전화 :)			
② 방문 대상자 인적 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③ 방문 목적					
④ 방문 경위 (초청장, 방문알선 및 중개인 포함)					
⑤ 방문 예정 지역 및 기간					
⑥ 방문 및 귀환 예정 경로					
⑦ 방문 계획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⑧ 방문 경험 (과거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북한 방문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뒷 면)

- ※ 첨부서류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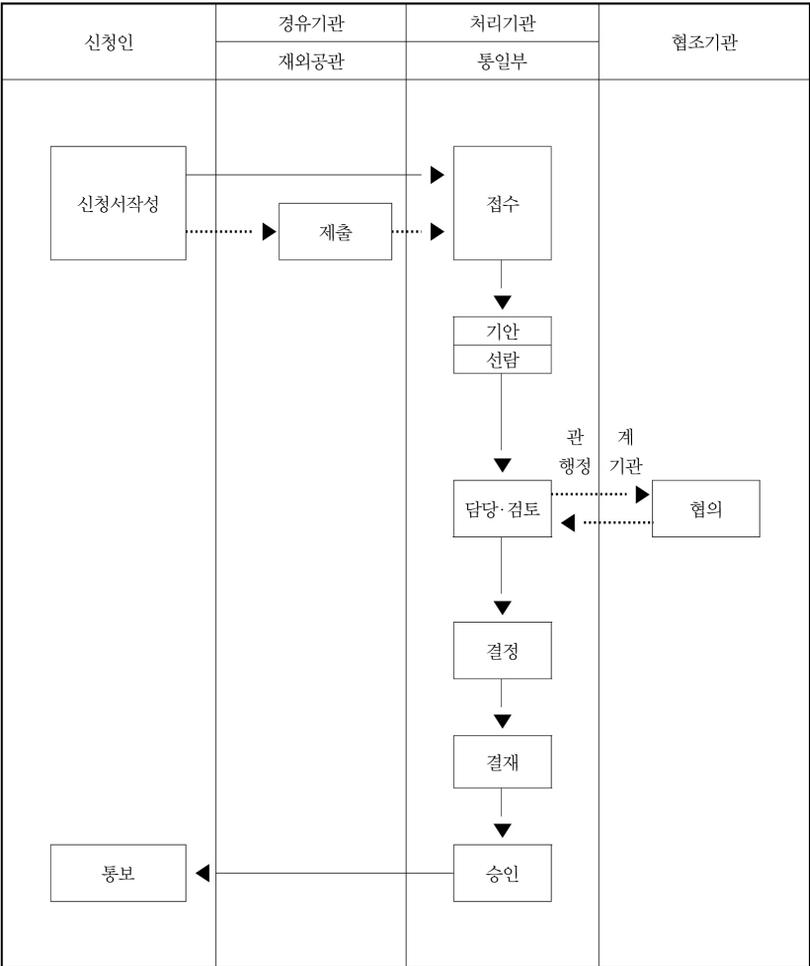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방문자 인적 사항	성명	(한자 :)		성별	남·여	사 진 3.5cm×4.5cm
	생년월일		출생지	신장	cm	
	주소·연락처					
	소속 및 직위	(전화 :)				
② 방문 대상자 인적 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③ 방문 목적						
④ 방문 경위 (초청장, 방문알선 및 중개인 포함)						
⑤ 방문 예정 지역 및 기간						
⑥ 방문 및 귀환 예정 경로						
⑦ 방문 계획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⑧ 방문 경험 (과거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한 방문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뒷 면)

- ※ 첨부서류
1.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input type="checkbox"/> 방문승인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업 신고인			인 적 사 항
성 명(한글)			사 진 (3.5cm×4.5cm)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재외국민)			
성 별			
주 소			
직 장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가 정		
	직 장		
	휴 대 폰		
신 장	cm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방문승인서

승인 번호		방 문 승 인 서
①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속 및 직위	
② 방 문 대상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③ 방문 목적		
④ 방문 지역 및 방문 기간		
⑤ 방문 경로		
⑥ 승인 조건		
⑦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북한, 남한) 방문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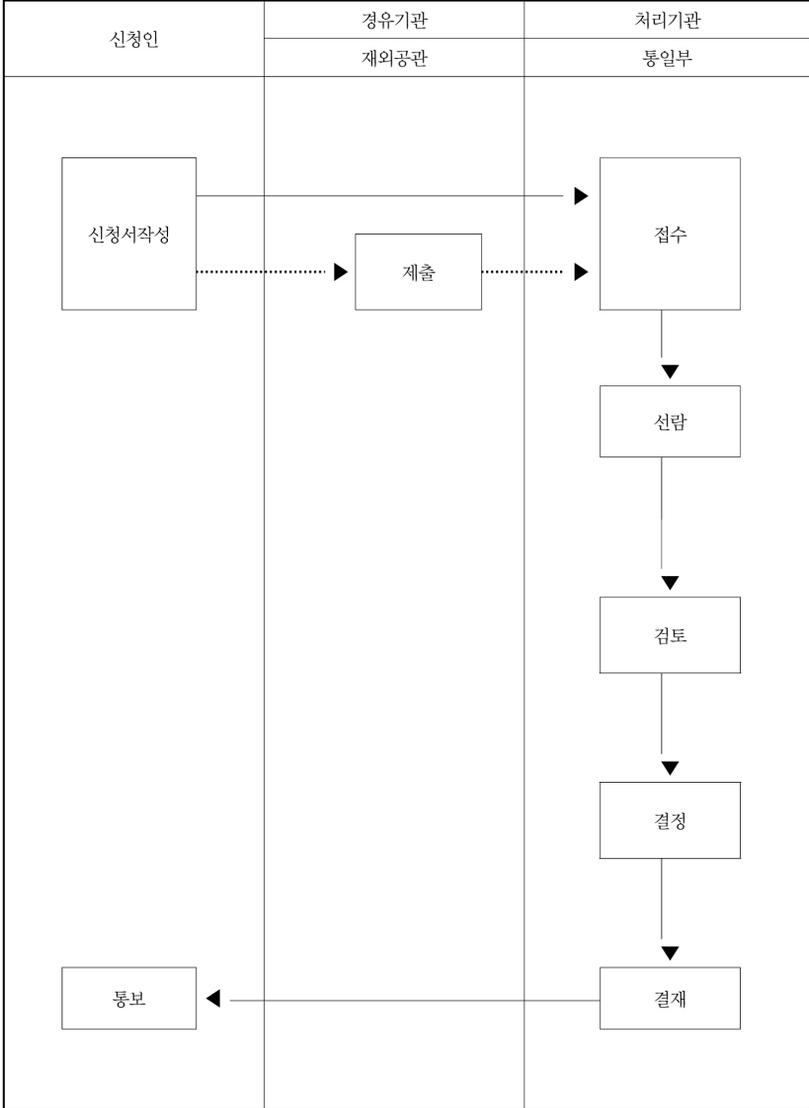
[별지 제5호서식]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앞면)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방문자 인적 사항	성명	(한자 :)		성별	남·여
	방문증명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화 :)			
② 방문 승인 내역	승인일자		승인번호		
③ 연장 기간	연장 전		연장 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④ 연장 사유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북한방문결과보고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① 방문자 인적사항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연락처	(전화:)			
	소속 및 직위	(전화:)			
② 방문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③ 방문 목적					
④ 방문 경위 (초청장, 방문알선 및 증개인포함)					
⑤ 방문 지역 및 기간					
⑥ 방문 경로					
⑦ 방문 결과 개요(활동 및 협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⑧ 특이사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북한방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북한방문 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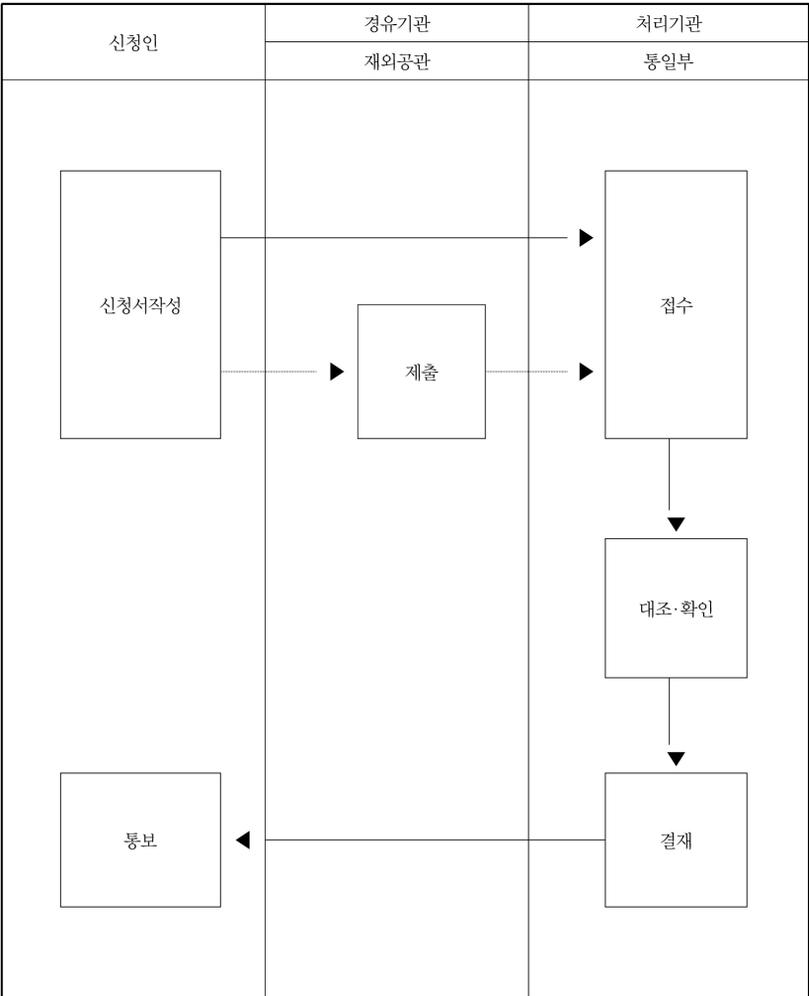
북한방문 신고서					
신고번호 :			신고일자 :		년 월 일
① 방문자 인 적 사 항	성 명		성 별	남·여	사 진 (3.5cm×4.5cm)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화번호:)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② 여 권 번 호			여권유효기간		
③ 방 문 대 상 자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④ 방 문 목 적					
⑤ 방 문 경 위 (입북비자 획득 등)					
⑥ 방 문 지 역 및 방 문 기 간(일정)					
⑦ 방 문 경 로 (경 유 지 포 함)					
⑧ 방 문 계 획 및 결 과					
⑨ 방 문 경 험 (과거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북한 방문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또는 대사(총영사) 귀하</p>					
<p>※ 신고번호는 공관별 전문 전치부호-신고연도(마지막 두자리)- 공관별 신고접수순위로 공관에서 기록합니다. (예 : 주한미대사관 US-88-001, 주일대사관 JA-88-125)</p>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 첨부서류
- 방문증명서 재발급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앞 면)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 접촉인 인적사항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화 :)				
	소속 및 직위	(전화 :)				
② 접촉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접촉인과의 관계	
③ 접촉 목적						
④ 접촉 경위 (접촉알선 및 중개인 포함)						
⑤ 접촉 예정 일시 및 장소						
⑥ 접촉 방법						
⑦ 접촉 경험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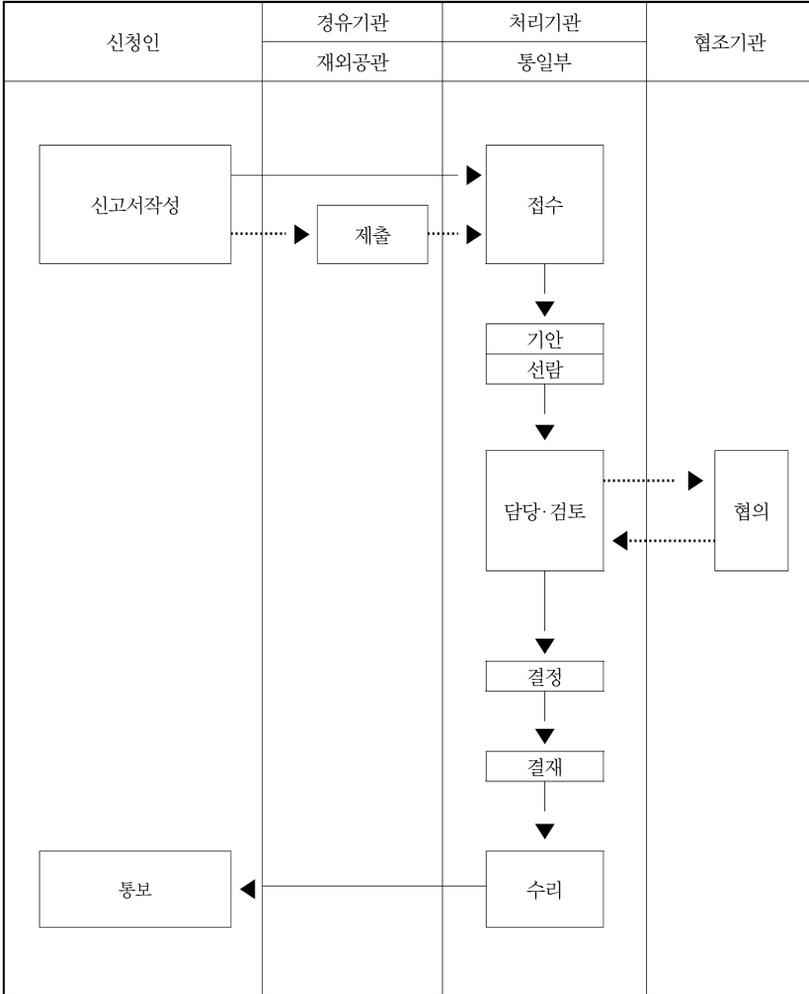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 면)

※ 첨부서류

1. 북한주민 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

수리 번호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
① 접촉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② 접촉 대상자	성명	
	소속 및 직위	
③ 접촉 목적		
④ 접촉 기간 및 장소		
⑤ 접촉 방법		
⑥ 수리 조건		
⑦ 수리 유효 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위와 같이 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부장관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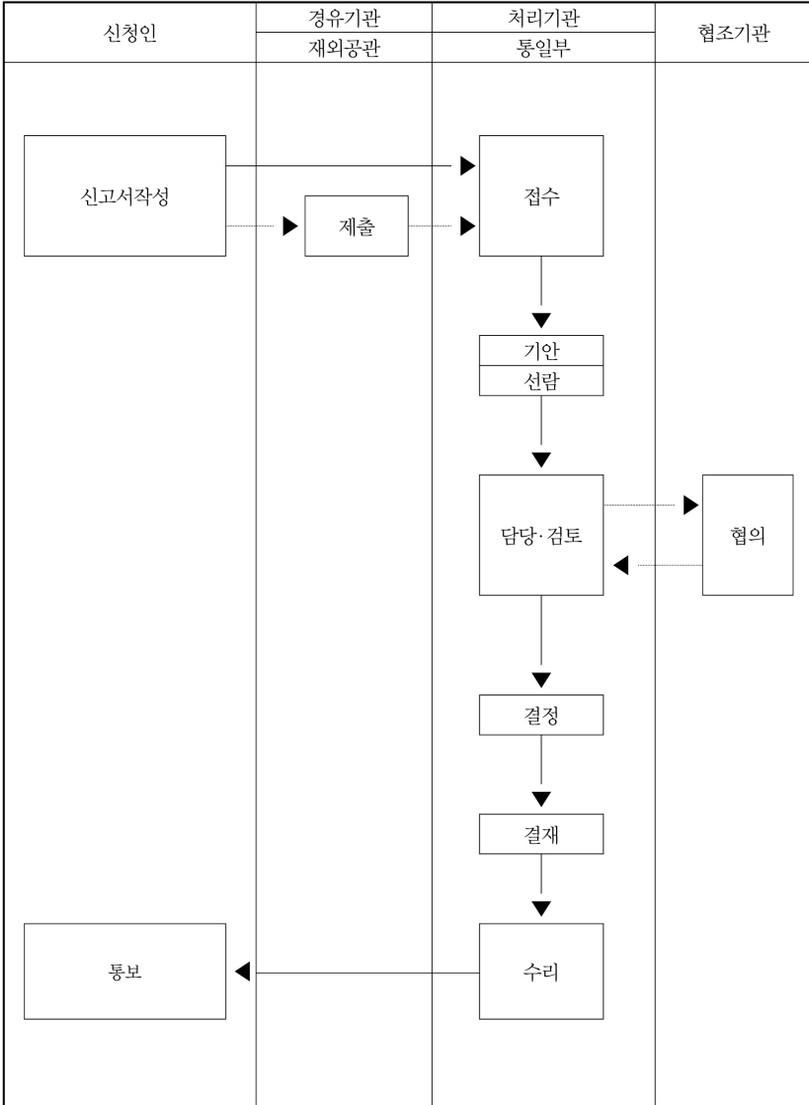
(앞면)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접촉인 인적 사항	성명	(한자 :)		성별
	접촉신고 수리 날짜 및 수리 번호		주민등록번호	남·여
	주소·연락처	(전화 :)		
② 연장 기간	연장 전		연장 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③ 연장 사유				
④ 북한주민 접촉경과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사업추진에 수반하여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 사업추진 경과를 포함하여 작성 합니다)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출입신고서

출 입 신 고 서

- 깨끗하고 바르게 적어 주십시오.
- □속은 적지 마십시오.
- 방문증명서 속에 보관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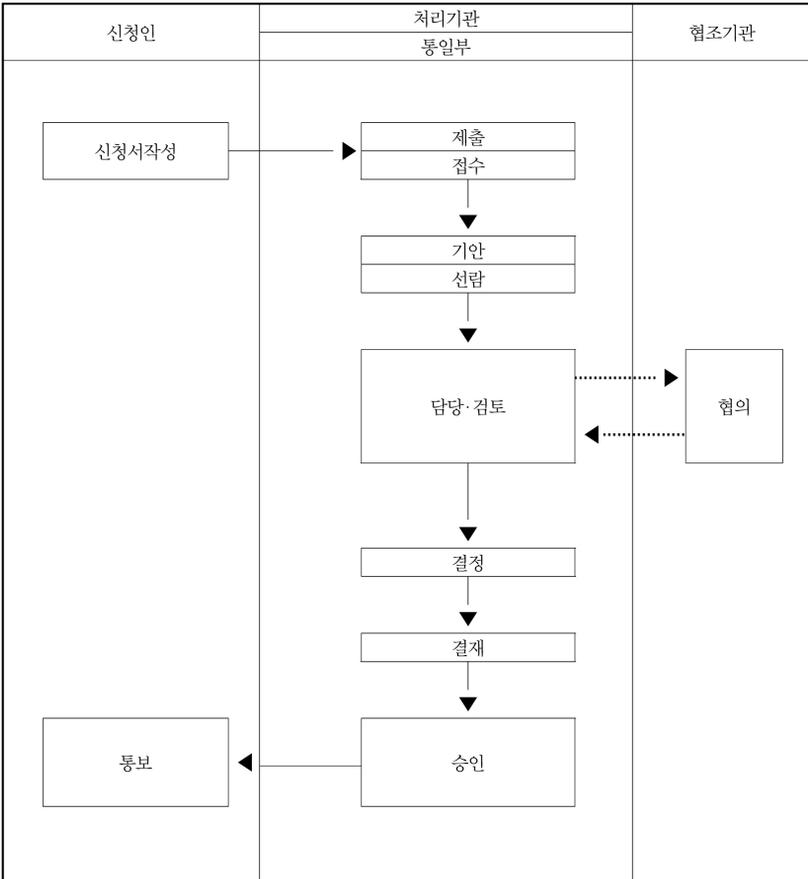
성 명		한자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후단 	성별 남 · 여
방문증명서번호		직업·직장명	
거주지 주소·전화번호			
방문지 주소·전화번호			
방문목적	출발지(탐승편명) ()		
방문예정기간	서 명		
공용란	심사인		

80mm×118mm 일반용지(OCR급) 105g/m²(특급)

※ 첨부서류

1. 반출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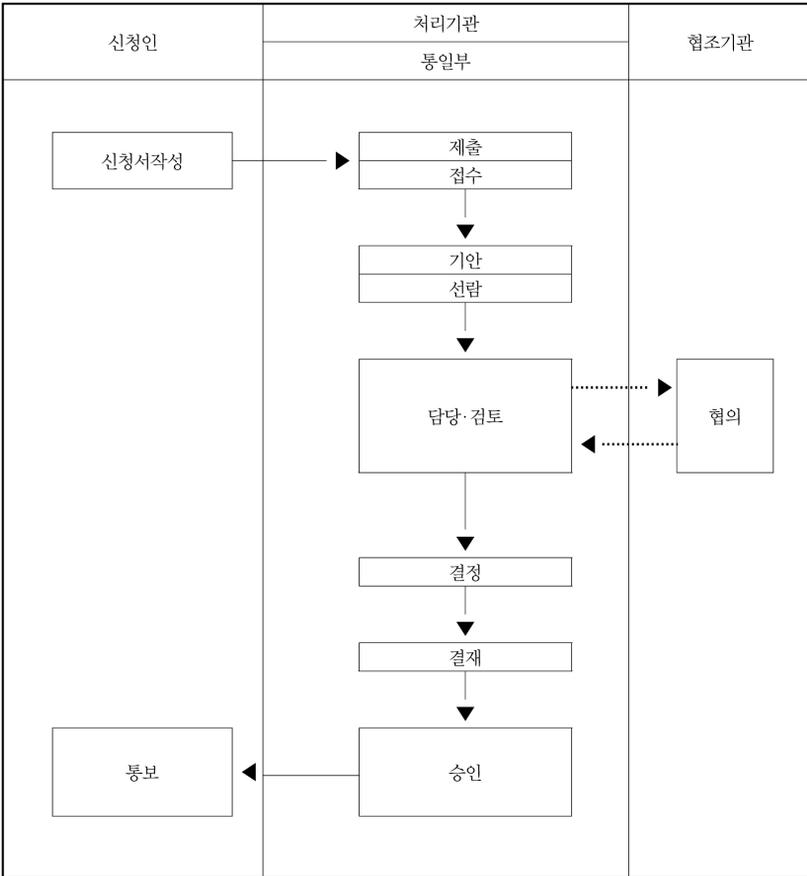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첨부서류

1. 반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반출입 승인 신청서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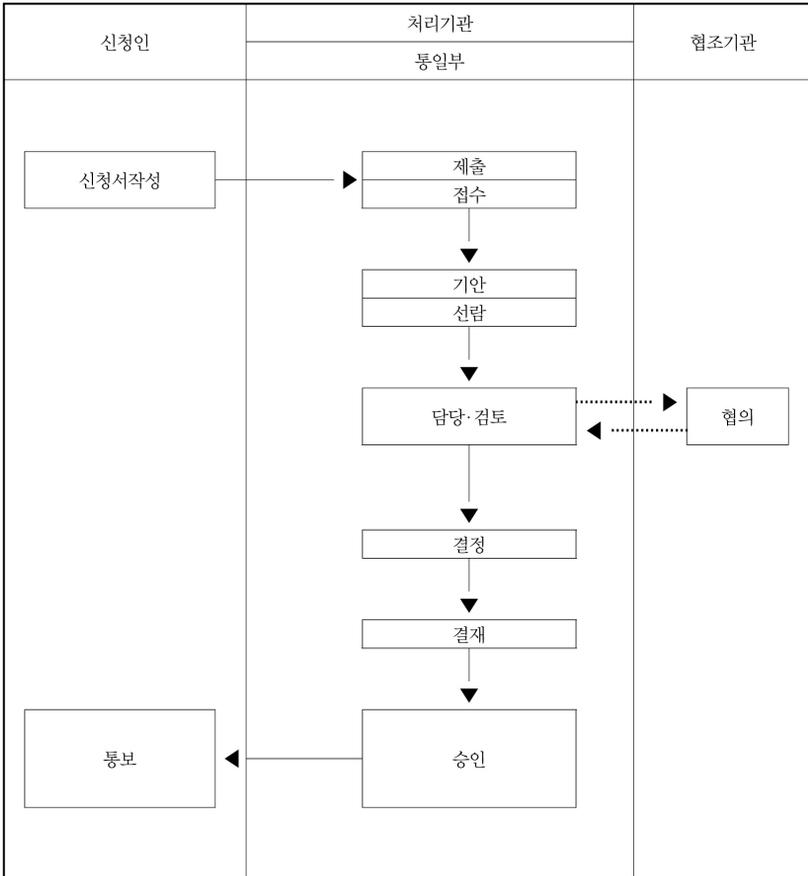
반출입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전화) (인)		무역업 고유번호	⑧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사업자 등록번호	⑨ 반 출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송금환() 추심어음() 기타()	
③ 반출입 목적			⑩ 반 입	금액	
④ 계약상대방				결제기간	
구분	반출	반입	⑩ 반 입	거래형태	
⑤ 원산지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송금환() 추심어음() 기타()	
⑥ 선적항				금액	
⑦ 도착항			결제기간		
⑪ 반출물품의 명세					
HSK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⑫ 반입물품의 명세					
HSK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⑬ 유효기간					
반출 :			반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참고: "HSK번호"란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를 말합니다.					
* 첨부서류: 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 첨부서류

1. 반출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반출 계획서

반출 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물품 생산자 (원산지)					
반출품 사용처					
반출 예정일					
북한주민집속 신고 수리 내역	성 명		신고수리일시		* 북한주민집속신고 수리자는 수리 내역 기재
	유효기간		신고수리번호		
	목 적				
연 락 처 (담당자)	성 명		전 화		
	FAX		이동전화		
	E-mail				
그 밖의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반입계획서

반입 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반 입 경 로				○ 북한출발지 ⇒ 남한까지	
(제3국 경유 사유)				○ 해당시	
판매방법					
대북한 교역실적 (최근 5년간)	반입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반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내역	성 명		신고수리일시		*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자는 수리 내역 기재
	유효기간		신고수리번호		
	목 적				
연 락 처 (담당자)	성 명		전 화		
	팩 스		이동전화		
	이 메 일				
그 밖의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반출입 계획서

반출입 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물품 생산자 (원산지)						
반출품 사용처						
반출 예정일						
실제 반출자						
반입 예정일						
실제 반입자						
반입 경로					○ 북한출발지 ⇒ 남한까지	
(제3국 경우 사유)					○ 해당시	
대북한 교역실적 (최근 5년간)	반입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반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내역	성 명		신고수리일시		*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자는 수 리 내역 기재	
	유효기간		신고수리번호			
	목 적					
연 락 처 (담당자)	성 명		진 화			
	팩 스		이동전화			
	이 메 일					
그 밖의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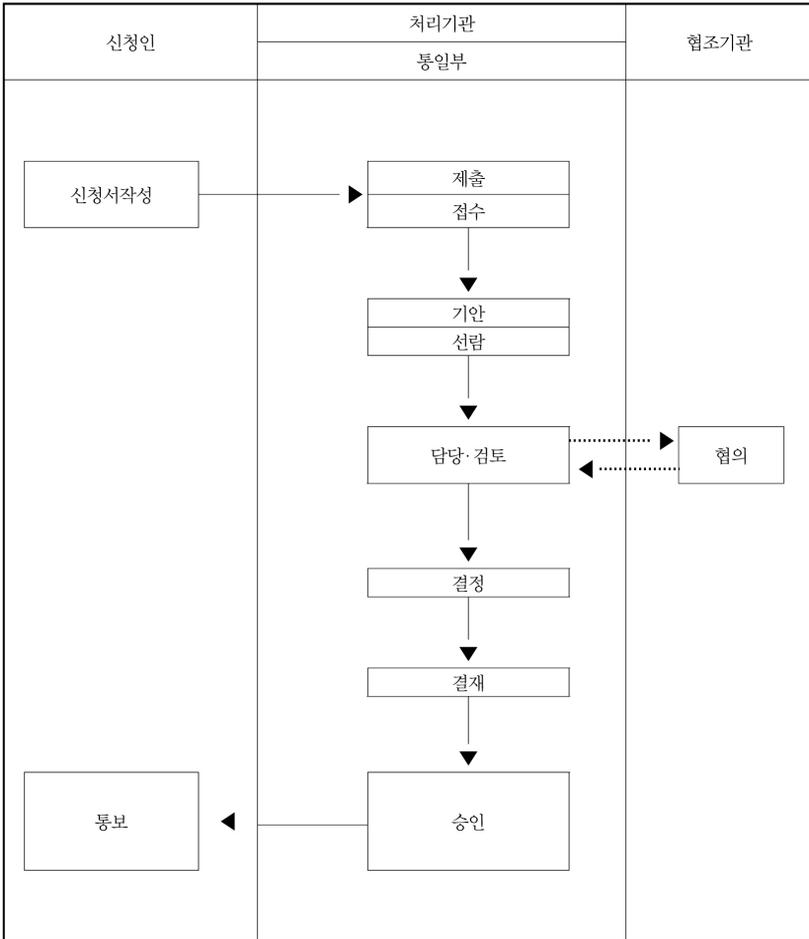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뒷 면)

※ 첨부서류

1.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반출 승인서

승인번호		반출 승인서		
① 반출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무역업 고유번호	⑦ 구 매 자		
		⑧ 결제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 용 장 (), 송금환 () 추심어음 () 기 타 ()		
③ 반출 목적				
④ 원 산 지		금 액		
⑤ 선 적 항		결 제 기 간		
⑥ 도 착 항		⑨ 가격조건		
⑩ HSK번호	⑪ 품 명 및 규 격	⑫ 단위 및 수량	⑬ 단 가	⑭ 금 액
⑮ 승 인 조 건				
⑯ 승인 유효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반입 승인서

승인번호		반입 승인서				
① 반입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무역업 고유번호	⑥ 공 급 자			
			⑦ 결제 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 용 장(), 송금환() 추심어음() 기 타()			
③ 반입 목적		금 액				
④ 원 산 지		결 제 기 간				
⑤ 선 적 항		⑧ 가격 조건				
⑨ HSK번호	⑩ 품 명 및 규 격	⑪ 단위 및 수량	⑫ 단 가	⑬ 금 액		
⑭ 승 인 조 건						
⑮ 승인유효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입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반출입 승인 신청서

승인번호		반출입 승인 신청서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전화) (인)		무역업 고유번호		⑧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사업자 등록번호		반 출	⑨ 결제조건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송금환() 추심어음() 기 타()	
					금 액	
③ 반출입 목적				결제기간		
④ 계약상대방				⑩ 가격조건		
구 분	반 출	반 입	반 입	⑪ 결제조건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송금환() 추심어음() 기 타()		
⑤ 원산지				금 액		
⑥ 선적항			결제기간		⑫ 가격조건	
⑦ 도착항						
반출물품의 명세						
⑬ HSK번호	⑭ 품명 및 규격	⑮ 단위 및 수량	⑯ 단가	⑰ 금액		
반입물품의 명세						
⑱ HSK번호	⑲ 품명 및 규격	⑳ 단위 및 수량	㉑ 단가	㉒ 금액		
㉓ 승인조건						
㉔ 승인유효기간 반출 : 반입 :						
「남북교류협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10px;">직인</div>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	
① 조정명령 대상자	
② 조정명령 대상 및 내용	
③ 조정명령 이유	
④ 조정명령 기간	
⑤ 위반시 제재조치	
⑥ 기타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통 일 부 장 관 직인 </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반입 결과보고서

반입 결과보고서				
① 반입자 관련 사항	상 호		무역업고유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반입품 상세내역				
② 반입품	품명		상표	수량
	북한내 생산단위(공장·농장등)		생산단위 소재지	생산단위 소속
거 래 정 보				
③ 북한교역당사자			④ 원산지증명번호	
⑤ 중개상명			소재지	
⑥ 수송경로	출발지	선적항	경유항	도착항
⑦ 대금결제 현 황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신용장	
	지급액	\$	신용장번호	결제계좌번호 (수취인), 송금액(\$)
유 통 정 보				
⑧ 유통방식	<input type="checkbox"/> 자가판매	<input type="checkbox"/> 도매상판매	<input type="checkbox"/> 소매상판매	<input type="checkbox"/> 실수요자납품
⑨ 판매처				
판매처명	소재지	납품가	중량	총액
특 이 사 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보고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귀 하</p>				
※ 첨부서류: 반입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협력사업승인 신청서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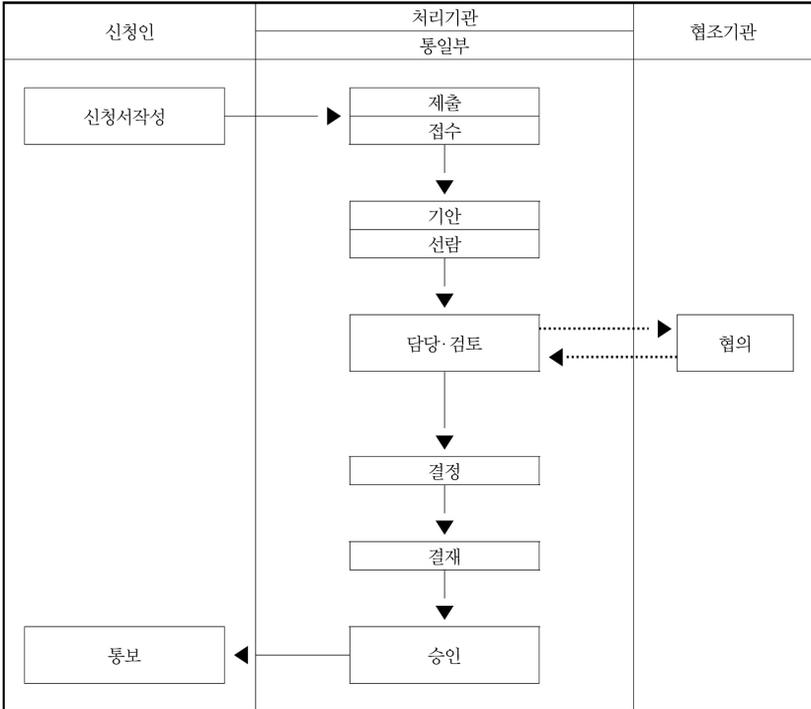
협력사업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② 상 대 자	상 호 (법 인 명)		소 속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③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업종 및 취급품목	코드번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명기	
	사업내용 및 규모 (투자금액, 근로자수 포함)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 구비서류: 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뒷 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합니다) 2. 협력사업 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및 협의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확인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0호서식]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앞 면)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변경전 승 인 사 항	승인 일자		승 인 번 호	
③변경 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십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 업종변경 시에는 변경 전 업종의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코드번호 명기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 업종변경 시에는 변경 후 업종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코드번호 명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 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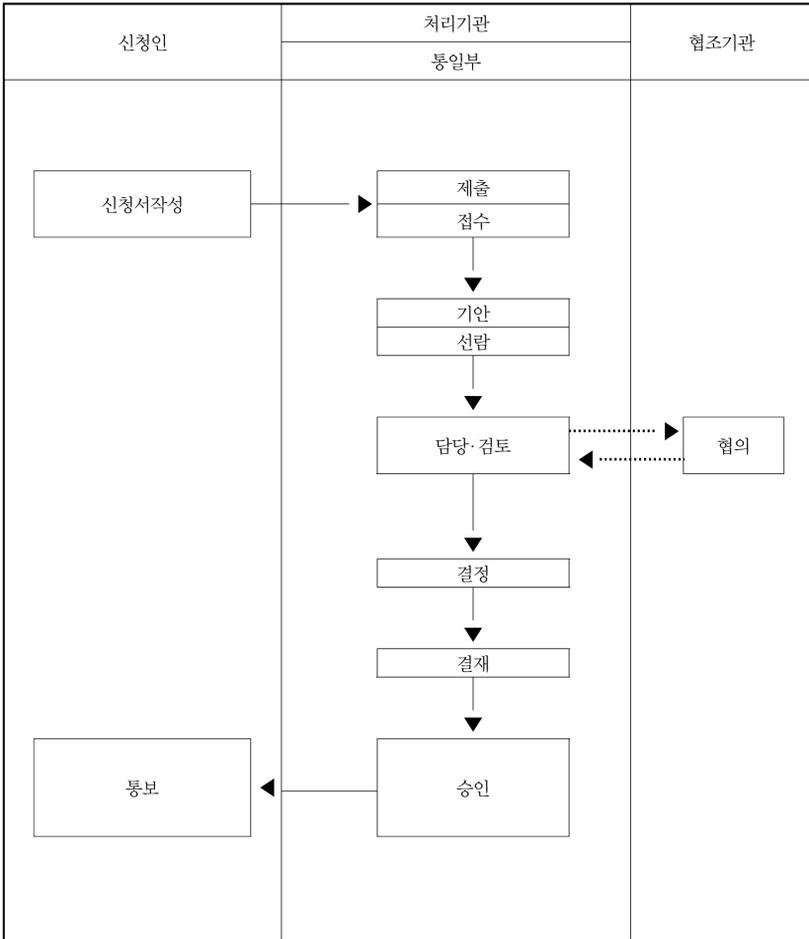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뒷 면)

※ 첨부서류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협력사업 승인서

승인번호		협력사업 승인서		
①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② 상대자	상 호 (법 인 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③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업종 및 취급품목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투자규모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④ 승인 조건				
⑤ 유효 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 협력사업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통 일 부 장 관 직인 </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협력사업 변경승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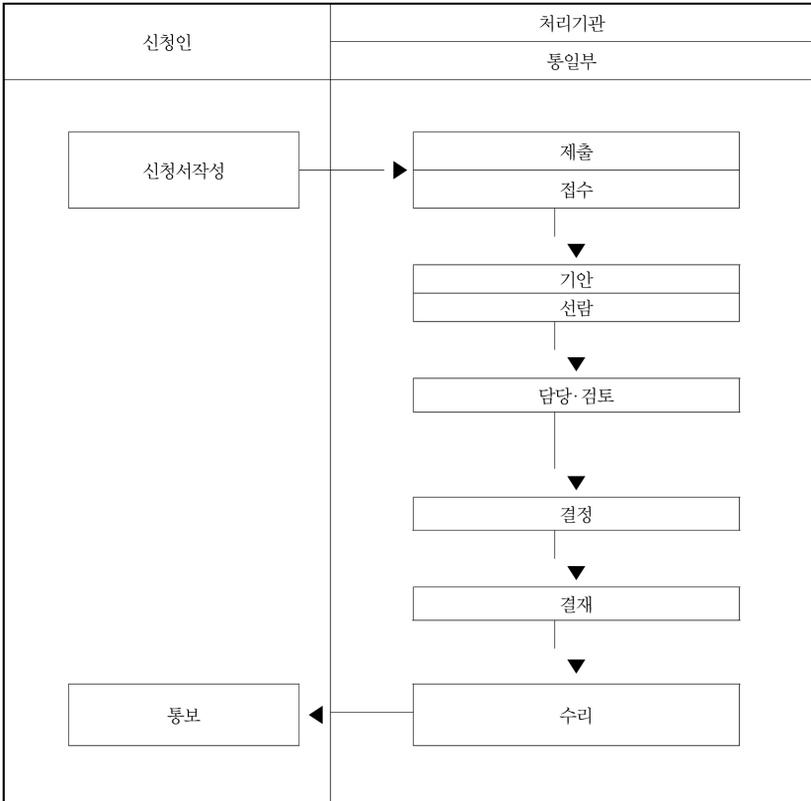
승인번호		협력사업 변경승인서		
①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② 변경전 승 인 사 항	승인 일자		승인번호	
③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④ 승인 조건				
⑤ 유효 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 협력사업 변경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뒷 면)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합니다)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3. 협력사업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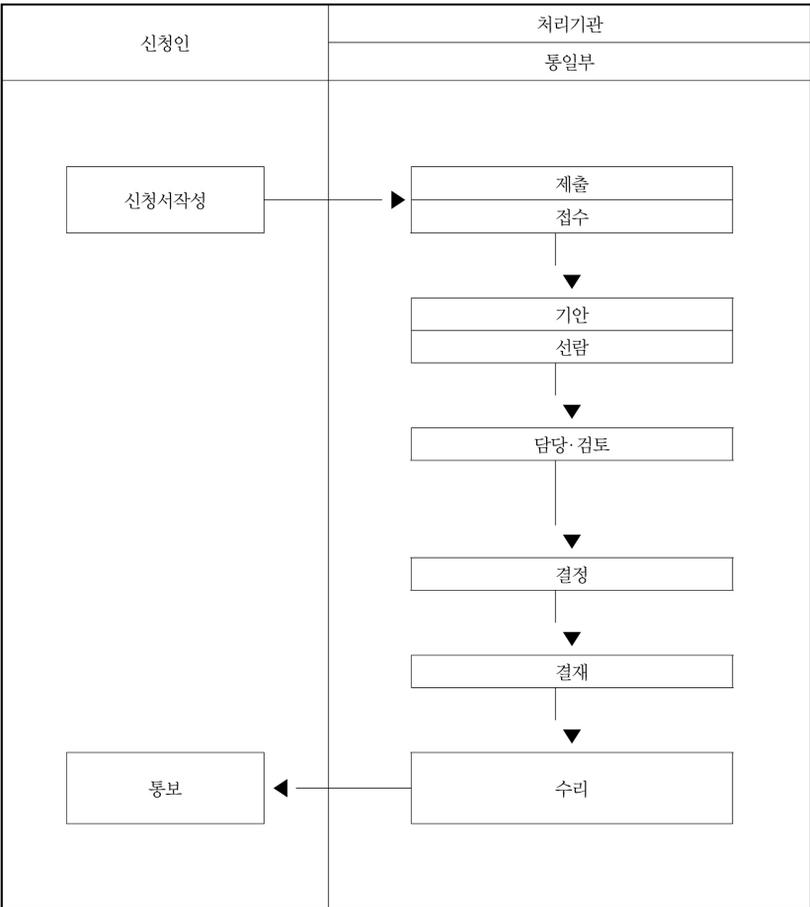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첨부서류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6호서식] 협력사업변경신고 수리서

수리번호		협력사업변경신고 수리서		
①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변경전 수 리 사 항	수 리 일 자		수 리 번 호	
③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④ 수리 조건				
⑤ 유효 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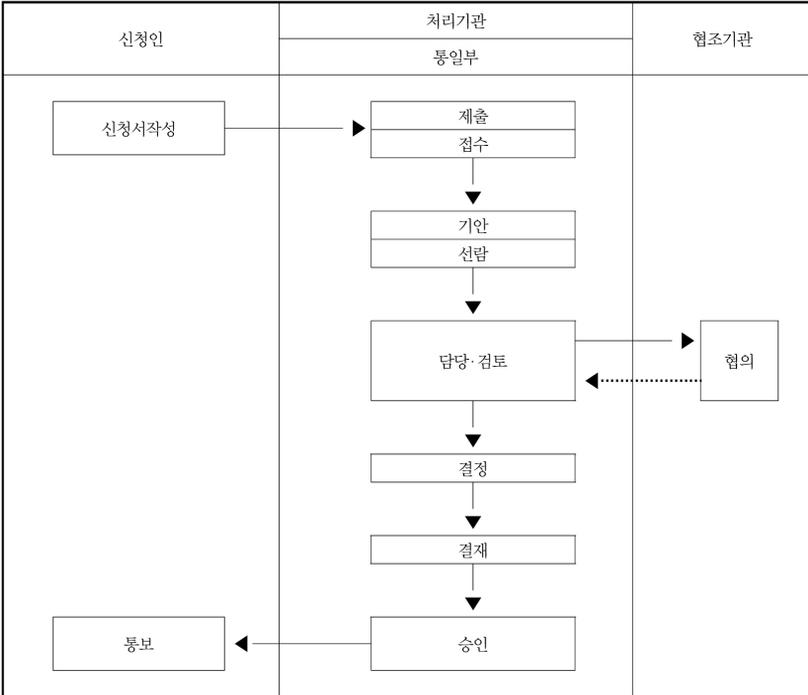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	
① 조정명령 대상자	
② 조정명령 대상 및 내용	
③ 조정명령 이유	
④ 조정명령 기간	
⑤ 위반시 제재조치	
⑥ 기타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통 일 부 장 관 직인 </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뒷 면)

구비서류	
<p>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아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송장비 운행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국적증서(「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말하며,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을 말하며,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만 확인합니다)
<p>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9호서식]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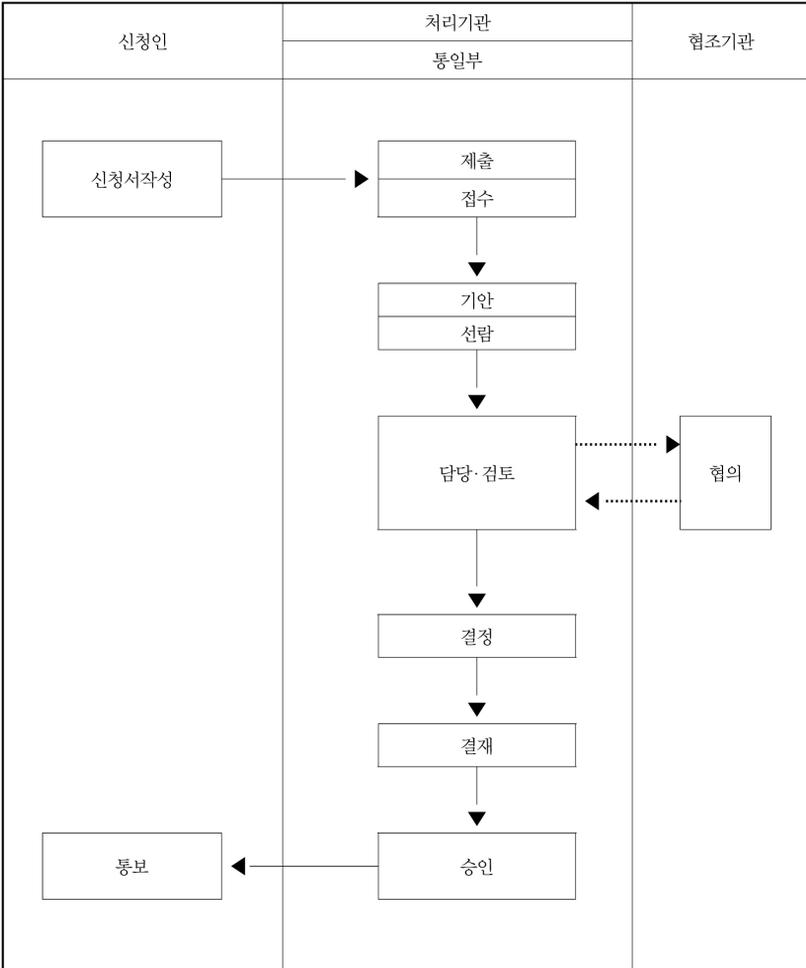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신 청 인 인적사항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② 변 경 전 승인사항	승 인 일 자		승인번호	
③ 변경내용 (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운행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 첨부서류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0호서식]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승인번호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①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② 수송장비 제한		수송장비 종류 및 명칭	수송장비 기종	선박선적 및 총톤수	승무원(승차) 정원	최대 적재량 (여객수)
③ 운항 목적						
④ 운항 용도		<input type="checkbox"/> 자가용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input type="checkbox"/> 화물운송 <input type="checkbox"/> 여객운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⑤ 운항 승인 유효기간						
⑥ 운항 노선						
⑦ 운항 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⑧ 승인 조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통일부장관 직인 </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

승인번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		
①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② 승인사항	승인 일자		승 인 번 호	
③변경내용 (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작성합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④승인 조건				
⑤운행 승인 유효 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변경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별지 제43호서식] 조사 공무원증

(앞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 사진 (2.5×3cm) </div> 김 ○ ○ 위 사람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조사공무원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통일부장관 직인

55mm×85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시설의 운영상황, 사무소,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4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4호서식] 조사계획서

조 사 계 획 서

귀하
주 소:
제 호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장소	
조사의 범위와 내용			
제출 자료			
법적 근거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그 밖의 안내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전화: , e-mail:)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발 간 등 록 번 호

11-1250000-000080-01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